

# 이사회 운영기준

버전정보	개정일자
0	1975.02.01.
1	1994.12.01.
2	2004.06.01.
3	2009.01.01.
4	2011.07.01.
5	2014.04.29.
6	2014.12.23.
7	2015.06.25.
8	2017.06.16.
9	2019.02.27.
10	2019.08.05.
11	2021.12.13.
12	2022.03.21.
13	2022.05.27.
14	2023.04.24.
15	2025.11.03.

## 1. 목적

이 기준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와 세부적인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2. 적용범위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, 다만 이 기준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해 의의가 있을 시는 이사회와 의결을 따른다.

## 3. 용어의 정의

### 3.1 이사회

이사에 의하여 구성되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관을 말한다.

## 4. 책임과 권한

### 4.1 이사회

4.1.1 이사회는 이사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
4.1.2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개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4.1.3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### 4.2 의장

4.2.1 대표이사가 이사회와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.

4.2.2 의장은 필요 시 실무담당자를 이사회에 참석시켜 해당업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.

4.2.3 의장인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 순으로 이사회 소집권한 및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4.2.4 의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긴급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# 4.3 소집권자

4.3.1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.

4.3.2 의장 이외의 이사가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
4.3.3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 5. 전문위원회

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산하 전문위원회 중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전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함)의 운영은 아래의 규정에 따른다.

### 5.1 위원회 구성

5.1.1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함)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
5.1.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 및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한다.

5.1.3 ESG 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5.1.4 평가보상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,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한다.

### 5.2 위원장

5.2.1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사외이사 중 호선한다.

5.2.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.

5.2.3 위원장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# 5.3 위원회의 소집

5.3.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5.3.2 대표이사 또는 소속 위원은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.

### 5.4 이사회에의 재부의

위원회는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심의, 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### 5.5 위원회 부의사항

5.5.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.

5.5.2 ESG 위원회에 부의 및 보고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.

5.5.3 평가보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별표 4와 같다.

## 5.6 통지의무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위원회의 결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각 이사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각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 다만 관련 법령에 의해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## 5.7 준용

위원회의 소집절차, 제안 및 의안설명, 성립과 의결, 관계인의 참석, 의사록에 관하여는 이사회 운영기준을 준용한다.

# 6. 업무절차

## 6.1 이사회 안건 부의

6.1.1 의안을 부의 하고자 하는 부서는 이사회 소집 요청서와 부의안건의 내용을 이사회 주관 부서장을 통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.

## 6.2 이사회 소집

6.2.1 주관 부서장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 소집통지서와 의안을 회의일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부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## 6.3 부의 안건 설명

6.3.1 회의에 부의 될 의안의 제안설명은 당해 의안의 주관 임원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담당실무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.

## 6.4 이사회 의사록 작성

## 7. 기록 및 관리

### 7.1 의사록 등의 작성

7.1.1 이사회는 주관 부서장은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며,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### 7.2 보존기간

7.2.1 이사회 의사록 원본은 이사회 주관부서에서, 사본은 당해 업무 소관부서에서 보관하되, 10 년간 보존한다.

## 8. 관련문서

- 8.1 이사회 부의사항 (별표 1)
- 8.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부의사항 (별표 2)
- 8.3 ESG 위원회 부의사항 (별표 3)
- 8.4 평가보상위원회 (별표 4)

## 9. 첨부

서식 No.	서식명	비 고
PCP-A-101-F01	이사회 의사록	-
PCP-A-101-F02	이사회 부의 요청서	-
PCP-A-101-F03	이사회 소집 통지서	-

## 별표 1. 이사회 부의사항

### 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- 가. 주주총회의 소집
- 나. 매 결산기의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,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그리고 영업보고서
- 다. 정관의 변경
- 라.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
- 마.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### 2. 경영에 관한 사항

- 가. 중장기 사업계획(중장기 경영방침 계획, 경영합리화 계획 등)
- 나. 매기의 사업계획 예산과 결산
- 다. 상임이사 중 대표이사 사장,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 선임
- 라. 비등기임원의 주요직책(재무, 기획) 임명승인
- 마.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
- 바. 비등기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
- 사. 다음 각호 사규의 제정 및 개폐
  - (1) 이사회운영규정
  - (2) 내부회계관리규정
  - (3)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규정
  - (4) 기타 중요한 내규의 제정 및 개폐
- 아.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또는 폐지

### 3. 투자 및 재무에 관한 사항

- 가. 사외 신규출자, 출자회사 증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
- 나. 자기자본 1%이상의 Project 성 투자
- 다. 자기자본 1%이상의 유·무형 고정자산 및 중요한 투자 자산의 취득·처분
- 라. 신주발행사항의 결정
- 마. 자사주 매입 및 처분 결정
- 바. 이익소각의 결정

- 사. 중요한 차입금 (신규 장기차입)
- 아. 전환사채 발행사항의 결정
- 자.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사항의 결정
- 차. 기부찬조 (5 천만원 초과)
- 카. 결손처분 (6 억원 초과)

#### 4. 기타

- 가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행위  
(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이거나 50 억원 이상)
  - (1)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
  - (2)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
  - (3)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
- 나. 중대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
- 다. 명의개서 대리인 선임
- 라. 담보제공, 보증, 채무인수 및 기타 회사의 채무부담 가능성이 있는 사항
- 마. 국내외 지점, 사업소의 설치, 이전 또는 폐지
- 바. 주주명부 폐쇄 결정
- 사.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안으로 제출하는 사항
- 아. 준법지원인 임명, 준법통제기준 제정 및 개정

#### 5. 이사회 보고사항

- 가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나. 기타 관련법령상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

## 별표 2.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부의사항

1. 사외이사 후보의 결정
2.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주주총회 추천
3. 기타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## 별표 3. ESG 위원회 부의사항

1. 주주 손해 및 이해상충 우려 주요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
  - 가. 상법 및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
  - 나. 신규 투자 및 중대한 변경이 있는 기존 투자계획
  - 다. 신주 발행
  - 라. 자기주식 처분 및 포괄적 주식교환
  - 마. 합병/분할합병 및 분할
  - 바. 기타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(대규모 감자, 자산/영업양수도)
2. 지속가능경영 관련 중요한 사항

## 별표 4. 평가보상위원회 부의사항

1. 경영진 평가 및 보상 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
2. 경영진 평가 및 보상 계획 사전심의
3.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사전심의